

『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평생교육법 개정(2008. 2. 29)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(2009. 1. 1)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

3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의 영역 변경(안 제3조)
 -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기초·문자해득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
- 협의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 - 구미시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 →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
- 협의회 구성 변경(안 제8조)
 - 구성인원 : 15인 이내 → 12인 이내
 - 위 원 장 : 부시장 → 시장
-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 신설(안 제12조)
- 평생학습계좌제 도입·운영 신설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「평생교육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변경내용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평생교육의 영역을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교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하였으며
-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를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변경과 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12인 이내로,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음
- 또한,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·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('08. 2. 29) 및 시행규칙('09. 1.1)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